

2025. 7. 1. 시행

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

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

2025. 7. 1. 시행



CONTENTS

I 개선 내용 03

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06

1.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07
2. 사업장 적용 07
3.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11
4. 유의사항 22
5. 기준소득월액 결정 23
6. 보험료 납부 및 확인 24

III 일반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26

- 서식 30

I 개선 내용

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

III 일반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



I 개선 내용



1. 개선내용

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

- 일용근로자(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)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있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(월 소득 220만 원 이상) 근로를 판단하도록 개선

- (현행) 7.10. 근로 시작 시 7.10. ~ 8.9.까지 1개월 판단
- (개선) 7.10 근로 시작 시 7.31. 기준으로 1개월 판단

나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개선

-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(월 소득 220만 원 이상) 근로하였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
- (적용일) 2025.7.1.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

2. 업무처리 기준 개선

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(건설 및 일반 일용)

◆ 1개월 판단 기준 개선

- (1개월 판단 기준 명확화)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60시간)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 원 판단

<사례> 7.10.~7.31. 7일 근로, 8.1.~8.9. 3일

현행

-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 판단



취득일 : 7.10. 상실일 : 10.1.

개선

-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,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(월 소득 220만 원) 근로 판단



취득일 : 7.10. 상실일 : 10.1.

나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

◆개선 내용

- (현행) 건설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→ (개선)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(합산 220만 원) 이상 시 사업장 가입 대상
 - (적용원칙) ①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고, ②현장별 8일 미만으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(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 - (적용순서) ①건설현장별 가입대상(월 8일 이상 등) 확인 → ②현장별 월 8일 미만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(합산 220만 원) 이상 근로 여부 확인

II

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



II 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



1.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

-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**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**한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용되고 **직접노무비 대상**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

보건복지부장관 고시

- (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
- (2) 「전기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
- (3)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
- (4)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
- (5)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
- (6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

직접노무비 대상

- ▶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
- ▶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**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**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를 통하여 확인

간접노무비 대상

- ▶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-1
- ▶ 현장소장(공사현장대리인), 현장사무원 (총무, 경리, 급사 등), 기획설계부문 종사자, 노무관리원, 자재·구매관리원, 공구담당원, 시험관리원, 교육·신재담당원, 복지후생 부문종사자, 경비원, 청소원 등

2.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

가 건설 현장별 적용(건설현장별 8일 이상 근로시 현장으로 우선 적용)

- 1) 본사 및 상용근로자와 구분하여, **건설 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**
 - 분리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 시 **가입자가 없어도 사업장으로 적용**하고 공사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
 - 원수급인, 하수급인 사업장별 **건설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**

-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**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**
 - 이 경우,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**본사의 상용근로자나 일반 일용근로자**로서 가입 여부 판단

2) 건설공사(계약)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

- 단, **최초 공사(계약) 기간은 1개월 미만**이나,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**실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** 되는 건설 현장 포함

3)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

- **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***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일종일 뿐이므로 **사업장의 사후정산제도 해당 여부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** 여부와는 무관함

* 건설 현장의 4대 보험료 중 **연금·건강·장기 요양**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**기성금 지급 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수령**하고, 공사 완료 시 지급금액과 당초(도급금액) 산출 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

4)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

- **(원칙)** EDI로 신고
 - **(예외*)** 서면, 우편, 팩스,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 신고
- * EDI 시스템 이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**사업장 적용(등록) 신고**
 - **(필수 구비서류)**
 -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
 -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·전자고지 신청서(서식 1)
 - ③ **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서***
 - * 공사계약서는 **사업장 성립일자, 공사기간** 등 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
 - **(신고 구분 코드) “4:당연적용-건설”**로 등록

사업장 적용(등록) 유의사항

- 신고구분코드 “4.당연적용-건설”을 선택한 경우 **건설 사업기간, 최초 발주형태, 해당 연월일자**를 빠짐없이 등록
- 사업장 등록방법
 - (1) 사업장명칭 : **회사명칭+현장**[예: (주) 00건설 00동00공사현장]
 - (2) 사업장주소 :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,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
 - (3)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: **본점사업장의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로 등록**
 - (4) 사용자 : **본점사업장의 사용자**로 등록
 - * 가입대상구분 “07-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”로 등록
 - (5)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: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

● 사업장 내용변경(정정)

- **공사기간이 연장***되거나 사업장 등록 등에 변경(정정)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
 - ※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「변경된 공사계약서」 첨부(방문, 우편, FAX 가능)하고, 계약서가 없을 경우, 공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입증자료를 사업장으로부터 징구

● 사업장 탈퇴

- **(탈퇴일)**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
 - ※ 다만,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로 탈퇴
- **(탈퇴 사유코드)** “09-사업종료”로 등록
 -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

나 건설 사업장 적용

1) (가입대상) 건설현장별 8일(또는 월 220만 원)미만으로 건설현장별 적용 제외되나 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(또는 합산소득 220만 원)이상 근로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

- **(적용원칙)** ① **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**하고, ② **현장별 8일 미만으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(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**

- **(적용순서)** ①건설현장별 가입대상(월 8일 이상 등) 확인 → ②현장별 월 8일 미만이나 **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(합산 220만 원) 이상 근로 여부 확인**

2) 건설사업장 적용시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

- (기존) 공사 현장별 → **(변경) 공사 현장별, '건설일용관리'*추가(1개만 관리)**
* (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) 사업장 규모 판단을 고려하여 **건설사업장 합산 시 적용되는 대상자만 분리 적용**

3) 사업장 적용(등록) 신고

- **(필수 구비서류)**
 -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
 -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·전자고지 신청서<서식 1>
- **(신고 구분 코드) “4:당연적용-건설”로 등록**

분리적용 사업장 신고 유의사항

※ “000회사명 건설일용관리” 분리 적용 신고서 접수 시 등록여부 확인 후 처리

- ① (분리적용 사업장 명칭) 회사명칭 + 건설일용관리[예 : (주)00건설 **건설일용관리**]
- ② (건설사업기간) 성립 신고일('25.7.1. 이후) ~ 9999.12.31.
- ③ (사업장주소) 본사 주소
- ④ (사업자(법인)등록번호) 본사 사업장의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로 등록
- ⑤ (사용자) 본사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
가입대상구분 “07-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” 등록

3.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

구분	1 건설 현장 기준 적용	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취득일	①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: 근로시작일	①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 : 근로시작일
	②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하였으나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 :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	②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하였으나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 :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
	③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 : 근로시작일	③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 : 근로시작일
상실일	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	①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이 220만 원) 이상 근로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
	②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 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가능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	②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기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 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가능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건설일용 근로자 가입요건 판단 흐름도



가 자격 취득일 예시

사례 ①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
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①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8		8
A현장	7.17. ~ 7.20.	4	8.21. ~ 8.24.	4	9.5. ~ 9.15.	4
B현장	7.21. ~ 7.24.	4	8.25. ~ 8.28.	4	9.20. ~ 9.29.	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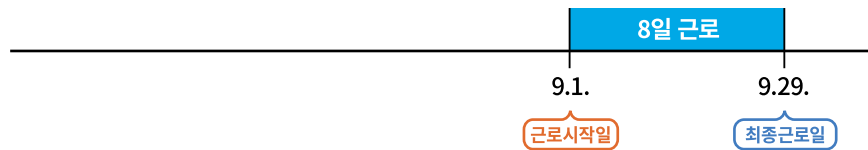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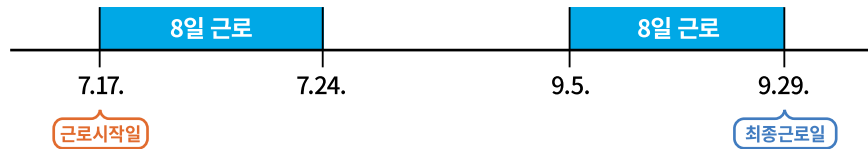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①-2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▶ 근로시작일이 초일이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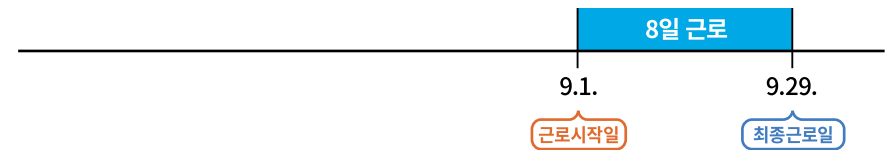
▶ 연속근로도 없고 근로시작일도 초일이 아닌 경우



1개월 미만으로 가입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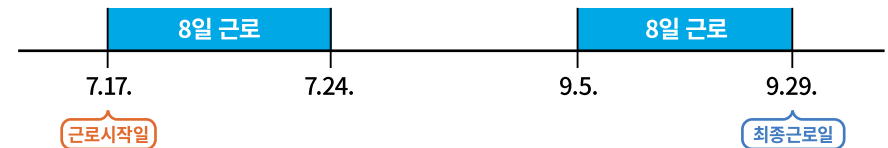
사례 ①-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이 초일이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



구 분	9월	
	근로기간	일수
계		8
A현장	9.1. ~ 9.15.	4
B현장	9.20. ~ 9.29.	4

▶ 사업장 기준 연속 연속근로도 없고 근로시작일도 초일이 아닌 경우



구 분	7월		구 분	9월	
	근로기간	일수		근로기간	일수
계		8			8
A현장	7.17. ~ 7.20.	4		9.5. ~ 9.15.	4
B현장	7.21. ~ 7.24.	4		9.20. ~ 9.29.	4

1개월 미만으로 가입 제외

사례 ①-3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이 초일이고,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



☞ **취득일 : 9.1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초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8일 근로하였고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연속하여 근로하여 9.1. 자격취득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근로하여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10.1 상실*

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사례 ①-3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이 초일이고,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



구 분	9월		10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
A현장	9.1. ~ 9.15.	4	10.3. ~ 10.4.	1
B현장	9.20. ~ 9.29.	4		

☞ **취득일 : 9.1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초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근로하였고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연속하여 근로하여 9.1. 자격취득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하여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10.1 상실*

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사례 ①-4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 이후 연속하여 근로하였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



☞ **취득일 : 9.1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확인하여 8일(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를 판단

- 따라서, 근로 월이 이어져 있는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판단하여 가입 대상 여부 판단

- 7월 말 기준 8일 이상 근로하여 7.17. 취득이나 근로시작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(8월) 8일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7월 가입 제외

상실일 : 8월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가입 대상 월에서 제외하고 9월은 8일 이상 근로하여 9.1. 취득, 10.1. 상실

* 다만,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7.17 취득, 10.1. 상실 가능

사례 ①-4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 이후 연속하여 근로하였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2		8
A현장	7.17. ~ 7.20.	4	8.13. ~ 8.16.	2	9.5. ~ 9.15.	4
B현장	7.21. ~ 7.24.	4			9.20. ~ 9.29.	4

☞ **취득일 : 9.1. 상실일 : 10.1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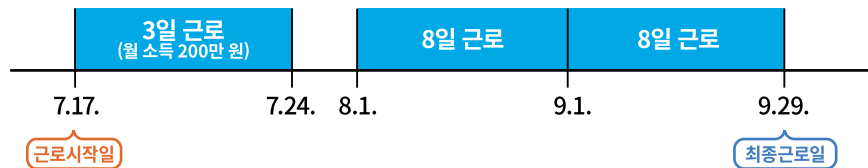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확인하여 합산 8일(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를 판단

상실일 : 8월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고 9월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9.1. 취득, 10.1. 상실

* 다만,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7.17 취득, 10.1. 상실 가능

사례 ②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하였으나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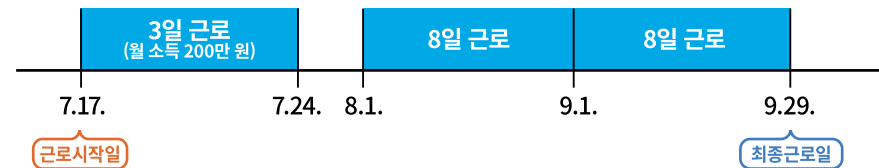
☞ **취득일 : 8.1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(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)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②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한 경우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3		8		8
A현장	7.17. ~ 7.24.	3	8.21. ~ 8.24.	4	9.5. ~ 9.15.	4
B현장			8.25. ~ 8.28.	4	9.20. ~ 9.29.	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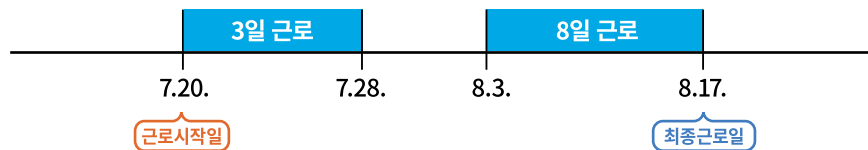
☞ **취득일 : 8.1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)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자격취득일 적용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②-2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부터 근로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고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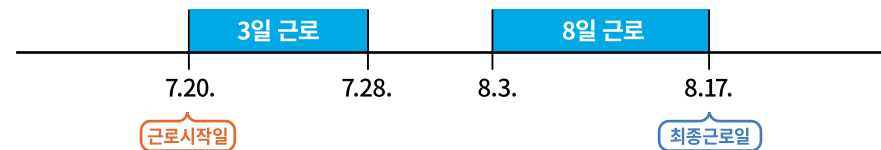
취득일 : 8.1. 상실일 : 9.1.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(또는 소득 220만 원 미만) 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

상실일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초일로 상실

사례 ②-2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근로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고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



구 분	7월		8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3		8
A현장	7.20. ~ 7.28.	3	8.3. ~ 8.10.	4
B현장			8.12. ~ 8.17.	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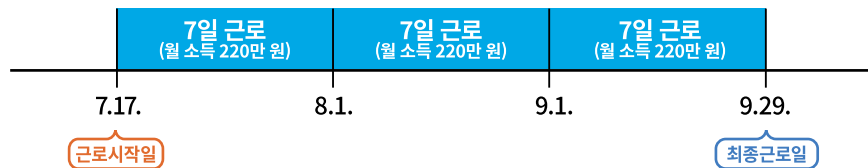
취득일 : 8.1. 상실일 : 9.1.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이나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

상실일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초일로 상실

사례 ③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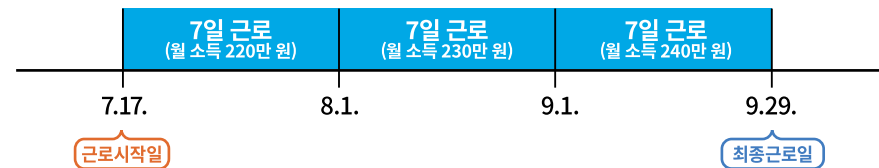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으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 적용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③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



구 분	7월			8월			9월		
	근로기간	일수	금액	근로기간	일수	금액	근로기간	일수	금액
계		7	220		7	230		8	240
A현장	7.17. ~ 7.20.	3	100	8.21. ~ 8.24.	4	130	9.5. ~ 9.15.	4	120
B현장	7.21. ~ 7.24.	4	120	8.25. ~ 8.28.	3	100	9.20. ~ 9.29.	4	120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이나 그 기간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므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

나 자격 상실일 예시

사례 ①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▶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(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
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①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▶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(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 근로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8		8
A현장	7.17. ~ 7.20.	4	8.21. ~ 8.24.	4	9.5. ~ 9.15.	4
B현장	7.21. ~ 7.24.	4	8.25. ~ 8.28.	4	9.20. ~ 9.29.	4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사례 ② 건설 현장 기준 적용

- ▶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
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9.1. 또는 10.1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으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9.1.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인 10.1.을 상실일로 적용

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사례 ② 건설 사업장 기준 적용

- ▶ 사업장 기준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기준 합산 8일(합산 소득 220만 원) 미만 근로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8		7
A현장	7.17. ~ 7.21.	4	8.21. ~ 8.24.	4	9.5. ~ 9.15.	3
B현장	7.22. ~ 7.25.	4	8.25. ~ 8.28.	4	9.20. ~ 9.29.	4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9.1. 또는 10.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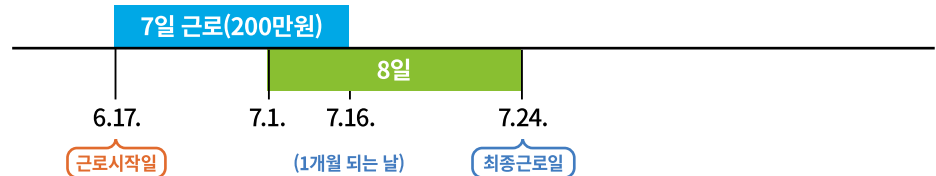
취득일 : 사업장 기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 8일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합산 8일 미만 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미만으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9.1.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인 10.1.을 상실일로 적용

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4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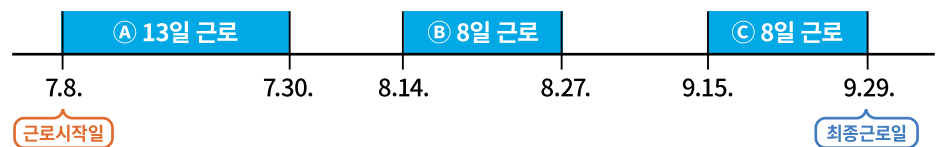
- 가 (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)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현행과 같이 본점 규모 판단 후 '건설일용관리' 분리적용 사업장 규모 판단
- 나 7월 이전 근로시작일이 있는 경우(건설현장 및 건설사업장 동일 판단)



취득일 : 7.1. 상실일 : 8.1.

※ 개선 지침 적용일 이전부터 근로하였으나 8일 미만으로 가입 제외된 자가 지침 적용일('25.7.1.) 이후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을 판단함으로 7월은 가입 대상

- 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근로일수를 판단하여 적용여부 확인하며 취득·상실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



▶ <착오 처리> ① 취득/상실(7.8./7.31.) ② 취득/상실(8.14./8.28.) ③ 취득/상실(9.15./9.30.)

▶ <적정 처리> 취득(7.8.) / 상실(10.1.)

- 라 건설현장 8일 이상 근로하였으나 건설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

<근로일이 없는 월이 있는 경우>

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8		8
A현장	7.17. ~ 7.29.	8			9.5. ~ 9.20.	8
B현장			8.5. ~ 8.25.	8		

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

※ 건설현장별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건설현장별 8일 이상 근로가 확인되나 근로가 연속되지 않아 건설현장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사업장 기준 판단

- 건설 현장을 우선 판단 후 건설사업장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

8일 근로

8일 근로

8일 근로

7.17.

8.1.

9.1.

9.29.

근로시작일

최종근로일

구 분	7월		8월		9월	
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	근로기간	일수
계		8		9		16
A현장	7.17. ~ 7.29.	8	8.2.	1	9.2. ~ 9.15.	8
B현장			8.15. ~ 8.25.	8	9.17. ~ 9.22.	4
C현장					9.25. ~ 9.29.	4

① 취득일: 7.17. 상실일: 9.1.〈건설사업장〉 ② 취득일: 9.1. 상실일: 10.1.〈A현장〉

※ **건설현장별 우선 적용 원칙**에 따라 A현장 기준 근로시작일인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판단할 때 7월은 8일, 8월은 1일, 9월은 8일 근로일수가 있어 9월은 A현장으로 가입

사업장 기준 7월에 A현장 8일근로, 8월은 B현장 8일 근로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연속월에 근로 이력이 있어 7월과 8월은 사업장으로 가입

- A현장 기준 7월과 9월에 8일 이상 근로 확인, A현장 가입 대상 월은 9월임

- 9월은 A 현장 8일,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8일 이상이나 건설 현장 적용이 우선이므로 **현장으로만 적용**

5. 기준소득월액 결정

가 적용대상: 건설현장 및 건설사업장의 일용근로자

나 적용기준: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 월액으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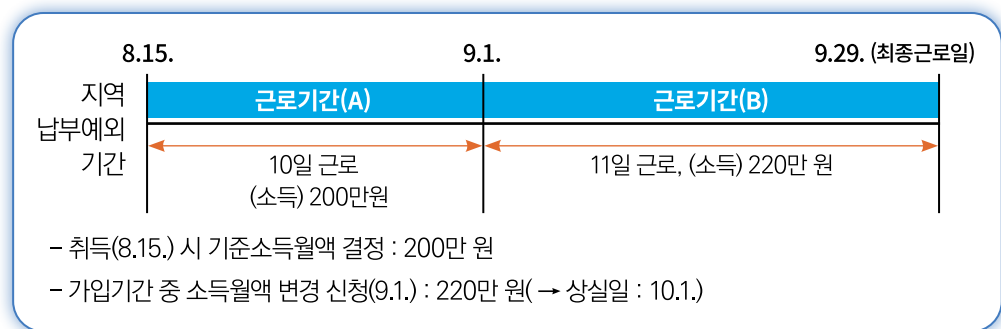
다 결정 방법

- 자격취득(또는 납부재개) 시
 - 결정기준 : 취득(재개)월의 실제 소득월액
 - 적용기간 : 취득(재개)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
 - 가입기간 중
 - 결정기준 :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한 매월 실제 소득월액
 - 적용기간 :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
- ※ 매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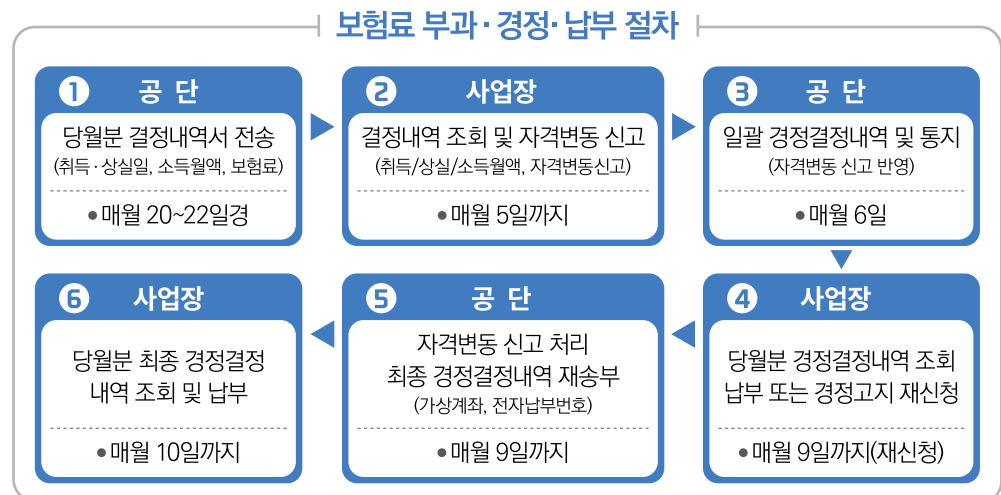
- 당월 초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기준소득월액 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, 적용일은 당월의 초일을 변동일로 적용
 - 잦은 경정에 따른 변동일 및 처리일의 상이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방지

기준소득월액 결정 예시

[사례]



6. 보험료 납부 및 확인



가 보험료 경정

- 당월 보험료 부과
 - 자격변동 신고 마감일(매월 15일)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내역서 및 전자 고지서 송부

● 일괄경정

- 당월 결정 내역 확인 후 자격변동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(휴일인 경우 다음 날)까지 신고
- 변동사항을 반영한 일괄경정 결정 내역서를 사업장에 EDI로 통지(매월 6일)
- 건설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
 - * 일괄경정 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 납부 번호(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, 인터넷 지로, 인터넷뱅킹, CD/ATM)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

● 수시 경정

- 일괄경정 전·후에 보험료 납부 및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**수시 경정 고지 신청***
 - * 납부 마감일 1일 전(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전날)까지 EDI로 경정고지 신청
 - ※ 납부마감일에는 EDI 신청 불가(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사에 신청)
- 수시 경정 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 결정내역서를 EDI로 재송부

나 보험료 납부확인

- 사업장은 「사업장 국민 연금보험료(월별) 납부확인서」, 가입자는 「연금산정용 가입내용확인서(사업장가입자)」 발급 (EDI 시스템, 방문, 팩스, 인터넷 발급 가능)

III 일반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



III 일반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



1. 일반 일용근로자의 정의

-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**건설 현장 외의 사업장**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

2. 사업장 적용

-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 단위 적용

3. 사업장가입자 적용

가 가입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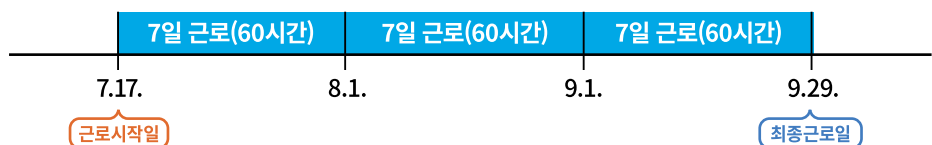
- **1개월 이상** 근로하면서, **월 8일 이상** 또는 **월 60시간 이상** 근로하거나, 1개월 동안 **220만 원 이상의 소득***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임

*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

나 1개월 판단

- 근로시작일 속한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**해당월의 말일까지**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**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(또는 월 60시간) 이상**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

〈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취득일 · 상실일 적용 사례〉
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인 7.31.까지 총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최종근로일이 9.29.일이나 근로시작일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판단하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

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

• 자격취득일

- ①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: **근로시작일**
- ②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및 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었지만,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: **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(1일)**
- ③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: **근로시작일**

• 자격상실일

- ①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: **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*
- ②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에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: **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***

*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상실할 수 있으며,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

라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

- ▶ 일반 일용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 예시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취득일 및 상실일 사례와 동일하므로,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조건의 예시만 제시함

자격 취득 및 상실일 적용

[사례 1] 근로시작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고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하고,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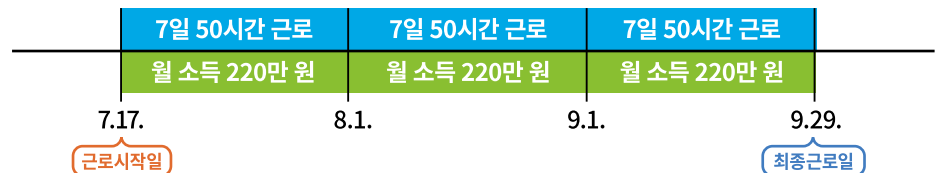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7일(월 210만 원) 근로하였으나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(초일인 경우 초일)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

[사례 2]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미만 및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



☞ **취득일 : 7.17. 상실일 : 10.1.**

취득일 :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(월 60시간) 미만이나 그 기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므로 근로시작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

상실일 : 1개월의 판단을 근로시작일(초일인 경우 초일)부터 말일까지 근로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 상실

보험료 일괄경정고지 · 전자고지 신청서

사 업 장	명 칭					
	사업장 관리번호	건강보험				
		국민연금				
	주 소				전화번호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	사업장과의 관계	
전자고지 신청내역	고지방법	정기고지서 EDI(전자문서교환시스템) 고지(매월 21~23일) ※ 정기고지서에 대한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				
	해당기간	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~ 해지신청 월				
일괄 경정고지 신청내역	신청사유	건설현장 사업장(건설일용근로자 정산)				
	해당기간	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~ 탈퇴 월				
	경정고지내역	경정일자	매월 6일 * 6일이 토·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			
		발송방법	EDI(경정고지 내역서 및 전자납부번호 등)			

※ 사업장에서는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

위와 같이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·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년 월 일

신청인(사용자) : (인)

국민연금공단 /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

신청인(사용자) : (인)

신청인(사용자) : (인)

1.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(보험료 등의 납입고지), 국민연금법 제88조의2(납입의 고지 등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(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),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(전자문서 고지 등)에 전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공단이 수집·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.